

## 교수학습혁신센터운영규정

제정: 2022.10.01.

개정: 2023.10.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학습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교수학습법 관련 연구, 개발 및 지원 <개정 2023.10.16.>
2.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교육 지원
3.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<개정 2023.10.16.>
4. 교육매체 제작 및 장비 지원
5. 강의평가 및 강의개선 지원 <개정 2023.10.16.>
6. 센터 사업 평가 및 환류
7. 기타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센터는 센터의 목적 달성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

1. 센터장: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2. 운영위원회: 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3. 협력기구: 교무처, 사무처, 입학학생취업처 등 교수학습혁신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.
4. 연구 및 행정: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 및 책임교수, 연구위원, 연구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교수학습혁신센터장으로 한다.
- ④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

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사업계획 수립
2. 센터 사업 운영결과 분석 및 환류
3.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

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